

창원지방법원 2022. 9. 8 선고 2022가단10764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

담당변호사 이중섭

피고A

소송대리인 B

변론 종결2022. 8. 11.

판결 선고2022. 9. 8.

주 문

1. 경남 창원군 C 임야 13950m²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,
가. B와 피고 사이에 2021. 5. 14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B에게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21. 5. 14. 접수 제78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D 통영점을 운영하던 B는 원고와의 사이에 아래 <표1. 보증내역>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을 한 후,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과 E은행으로부터 아래 <표2. 대출내역>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5,000만 원을 대출받았다.

<표1. 보증내역>

①	F	142,500,000	2020. 3. 20.	2025. 3. 19.	중소기업 자금대출 일반자금	기업은행 통영지점
②	G	85,000,000	2018. 6. 26.	2021. 6. 25.	대출	E은행 창원중앙지점

(단위 : 원)

<표2. 대출내역>

①	F	142,500,000	D통영점	2020. 3. 20.	150,000,000
②	G	85,000,000	H매장	2018. 6. 26.	100,000,000

(단위 : 원)

나. B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신용보증기간 중 신용사고가 발생하여 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요율의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.

다. B가 2021. 6.경 D 통영점을 폐업하는 등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, 이에 원고는 B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아래 <표3. 대위변제내역>기재와 같이 합계 216,961,064원을 기업은행과 E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.

<표3. 대위변제내역>

①	F	2021. 11. 8.	128,250,000	2,514,725	130,764,725
②	G	2021. 11. 8.	85,000,000	1,196,339	86,196,339

①	F	2021. 11. 8.	128,250,000	2,514,725	130,764,725
합계	213,250,000	3,711,064	216,961,064		

(단위 : 원)

라. B는 경남 창원군 C 임야 13950㎡ 중 4분의 1 지분(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)을 증여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, 부친인 피고에게 2021. 5. 14. 이 사건 공유지분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(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21. 5. 14. 접수 제784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

마.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.

1) 적극재산

1	이 사건 공유지분	6,730,875
2	통영시 I	6,000,000
합계금	12,730,875	

2) 소극재산

1	기업은행	이 사건 신용대출	135,000,000
2	E은행	100,000,000	
3	J은행	2021. 1. 7. 대출	28,792,000
4	K	2020. 2. 10. 대출	3,225,000
5	E카드	2020. 9. 15. 대출	945,000
합계금	267,962,000		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0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

마산회원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, L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바(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)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기해 대위변제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그로 인한 구상금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기초가 되는 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, B가 2021. 6.경 보증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, 보증사고일로부터 약 1개월 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실제로 원고가 2021. 11. 8. 기업은행과 E은행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를 비롯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합계 267,962,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B가 이 사건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B의 부친인 피고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.

다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B에게 2019. 4. 1.경 3,000만 원을 대여하고, 대물변제로 이 사건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, 또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, 설령 피고가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,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사실상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

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(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), 나아가 피고가 B의 아버지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라. 소결론

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21. 5. 14. 접수 제78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이봉수